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36호

2017. 11. 9.(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2264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7-2270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7-227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7-22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7-22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제2017-2283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 고 시

제2017-392호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9
제2017-3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
제2017-39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17-397호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지정고시	33

◆ 공 고

제2017-2229호 2017년도 제15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38
제2017-2240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40
제2017-224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40
제2017-224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41
제2017-2246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42
제2017-225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43
제2017-22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3
제2017-225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44
제2017-2259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45
제2017-22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55
제2017-227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58
제2017-227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58
제2017-2278호 2017년도 제4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61

◆ 구 고 시

제2017-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중구)	71
제2017-13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74
제2017-14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강북구)	76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노원구)	83
제2017-163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서대문구)	85
제2017-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금천구)	88

◆ 구 공 고

제2017-1257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90
제2017-12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양천구)	95
제2017-1446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도로 및 녹지 변경) 주민열람 공고(강서구)	96
제2017-16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구로구)	97
제2017-140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98

◆ 사업소고시

제2017-2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0
제2017-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0
제2017-2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1
제2017-2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1
제2017-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2
제2017-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2

◆ 사업소공고

제2017-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104
--------------------------------------	-----

◆ 정 정	105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64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 가. 소방서 출동기준(안 제3조)
- 나. 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안 제6조)
- 다.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안 제7조)
- 라. 지휘체계(안 제8조)
- 마. 통합지휘소 설치(안 제9조)
- 바. 기관별 임무부여(안 제11조)
- 사. 상황판단회의(안 제12조)
- 아. 재난현장 통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4층 현장대응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 : 3706-1713, FAX : 3706-1719, E-mail lari3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0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회계사고 등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키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상향 조정 및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회계관직의 재정보증금액을 1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6조제1항)
- 나.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제3항)
- 다.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감사 실시(안 제79조제3항)
- 라. 자금운용기록부 서식 변경(안 별지 제5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02-2133-3216, FAX: 02-2133-1029, E-mail: tree83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와, 같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 준용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16, FAX: 02)2133-1041, E-mail: pskpsk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 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및 규칙의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16, FAX: 02)2133-1041, E-mail: pskpsk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①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② 기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자치구에 위임
- 나.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53, FAX: 2133-0822, E-mail: youjiny8318@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83호**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일버리기 및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량을 감축하고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심사대상 완화 등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계약심사 제외대상 확대(안 제4조)

다. 특정제품 사전심의 제도 및 특정제품심사선정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 라. 특정제품이 포함된 사업 심사 시 사전 심의여부 등 검토조항 추가(안 제6조)
- 마. 특정제품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계약심사요청 서식에 사전검토 항목 추가 등 서식 개선
- 바. 그 밖의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전화 : 02-2133-3303, FAX : 02-2133-1032, E-mail : healingm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2호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4.14.)로 결정·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구 분	구 역 명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 (2011. 04. 14.)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적 (㎡)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29	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2017. 01. 31.
변경 (연장)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29	토지등소유자 등	2019. 01. 31

※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인근 성내1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성 고려할 것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2),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8호(2013.7.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70호(2013.12.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0호(2015. 5.14.), 제2015-193호(2015. 7. 2.), 제2015-345호(2015.11. 5.), 제2017-57호(2017. 2.23.), 제2017-286호(2017. 8. 3.)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중구 만리동2가 218-105~마포구 아현동 87-6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아현동 87-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만리2주택재개발구역 외 도로(소로3-000호) 신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폭 6m, 연장 12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정근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8번지 5층 503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0.

바. 금회 변경내용

1) 준공예정일의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9.30.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0.

2) 사업내용(조성방법) 변경 : 보강토 옹벽 일부 추가

3) 기타사항 : 토지이동 등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 및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권리종류	성명	주소	
	계		932.2	932.2					
1	중구 만리동2가 37-31	도	4.9	4.9	서울특별시	-	-	-	
2	중구 만리동2가 42-4	도	347.7	347.7	서울특별시	-	-	-	
3	중구 만리동2가 218-124	도	216.6	216.6	서울특별시	-	-	-	
4	마포구 아현동 87-63	도	361.0	361.0	서울특별시	-	-	-	
5	마포구 아현동 87-62	대	2.0	2.0	만리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	

2) 사용할 토지 또는 시설물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37-22

- 사용면적 : 43.06㎡

- 사유 : 도로 및 시설물(구조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재개발 부지 내 옹벽 및 도로부지의 무상사용

아.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연 번	소재지	지적(㎡)		관리청(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변경전	변경후	
	계		932.2			
1	중구 만리동2가 37-31	도	4.9	서울특별시	중구	무상귀속
2	중구 만리동2가 42-4	도	347.7	서울특별시	중구	무상귀속
3	중구 만리동2가 218-124	도	216.6	서울특별시	중구	무상귀속
4	마포구 아현동 87-63	도	36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상귀속
5	마포구 아현동 87-62	대	2.0	만리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무상귀속

자.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청 임대주택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요(변경)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감)137.7	439,218.7	2006.10~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39,356.4	감)137.7	439,218.70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57,622.1	증)10.4	157,632.5	35.9	-
	공공청사	7,600.0	-	7,600.0	1.7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	13,055.1	3.0	덕수중학교 존치
	하 천	8,423.4	-	8,423.4	1.9	청계천
	광 장	-	-	-	-	-
	공 원	10,109.7	-	10,109.7	2.3	4개소
	녹 지	7,544.8	감)3.6	7,541.2	1.7	-
	연구시설	1,200.0	-	1,200.0	0.3	
	공공공지	-	-	-	-	-
	도 로	109,689.1	증)14.0	109,703.1	25.0	-
택지 (획지)	소 계	281,734.3	감)148.1	281,586.2	64.1	-
	복합개발용지	254,851.3	감)148.1	254,703.2	58.0	-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	5,216.5	1.2	존 치
	국도호텔(상업·숙박)	1,800.0	-	1,800.0	0.4	
	중앙대코플라자	1,060.6	-	1,060.6	0.2	
	명보아트홀	1,256.5	-	1,256.5	0.3	
	매일경제신문	1,778.4	-	1,778.4	0.4	
	세운상가군	15,771.0	-	15,771.0	3.6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 ~ 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 ②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⑤ 교통계획(변경없음)
- ⑥ 경관계획(변경없음)
-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구역명	면 적(㎡)	구역명	면 적(㎡)	
6-3-1,2구역	14,845.0	6-3-1,2구역	14,707.3	간선부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비고
구 역	구역 면적(㎡)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추가면적 (㎡)	면적 (㎡)	비율 (%)	
6-3구역 (기정)	6-3-1,2 구역 14,845.0	10,180.1	4,664.9	1,322.6	11.50	-	1,322.6	11.50	
6-3구역 (변경)	6-3-1,2 구역 14,707.3	10,032.0	4,675.3	1,333.0	11.73	-	1,333.0	11.73	

※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되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변경)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9,356.4	감)137.7	439,218.7	100.0	
일반상업지역	439,356.4	감)137.7	439,218.7	100.0	

㉢ 용도지구(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 교통시설

㉥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7	40~47 (3.5~6.5m)	주간선 도로	4,000 (184)	서대문광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장 (종로4가 50-10)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4구역변 3.5m 완화차선
기정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을지로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3.26)	마른내길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충무로4 86-3	충무로4가 47-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상가 서측도로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상가 동측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99-9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9	을지로3가 164-1	입정동 139-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변경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삼풍상가대크보행 연결도로 중복결정(4.6m)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130호 (03.5.26)	청계천 북측 도로2.4구역변 일부확폭(3m)
기정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130호 (03.5.26)	청계천 남측 도로3.5구역변 일부확폭(3m)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1	산림동 278-1	입정동 2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1	5	10	국지 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는 지구내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	인현동2가 198-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충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7-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필동2가 5-3	충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5	필동2가 13-20	충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70	충무로4가 125-54	충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는 지구내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2	인현동1가 55-5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5-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2	충무로4가 24-6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0	필동2가 13-6	필동2가 13-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는 지구내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5	인현동2가 3	인현동2가 1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6	4	국지 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79	충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는 지구내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 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	증)155.70	155.70	-	
				길이(m)	-	증)33.90	33.90		
				폭(m)	-	증)3.00~5.05	3.00~5.05		
				높이(m)	-	증)25.50~38.00	25.50~38.00		
세부 사항	기정				변경				
	-				입체적 결정범위 1.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 지상부(1F) A=104.81㎡ , H=25.50 ~ 30.40m - 지상부(2F) A=44.48㎡,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 H=33.55 ~ 38.00m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 (면적 : 증)155.70㎡)	○ 면적 변경 -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설치

(이하 여백)

⑥ 철도(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5호선)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695호 (90.10.19)	-
기정	2	철도	고속철도(3호선)	벽제~양재동간	40.7km (310)	(3,479)	건교부고시53호 (80.2.22)	-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40.0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
변경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 출입구 면적 변경 : 6,240.0㎡ → 6,259.4㎡ (증 19.4㎡)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719.0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변경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 출입구 면적 변경 : 5,719.0㎡ → 5,998.5㎡ (증 279.5㎡)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철도 입체적결정 결정(변경)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58.0	증)11.7	69.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5호선)
				길이(m)	9.6	감)1.0	8.6		
				폭(m)	8.9	증)1.1	10.0		
				높이(m, 지하)	19.7~27.5	-	14.6~30.4		
세부 사항	기정			변경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5.0㎡, H=24.5m~27.5m - 지하부 : A=58.0㎡, H=19.7m~24.5m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9.3㎡ (증:4.3㎡), H=24.5m~30.4m - 지하부 : A=69.7㎡ (증:11.7㎡) (지상중복 19.3㎡), H=14.6m~24.5m					
변경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542.0	증)186.5	72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2호선) (기정)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6.5m~28.0m · 연결부 부분 H=16.2m~24.4m · 냉각탑 부분 H=25.5m~30.0m (변경)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3.6m~29.0m · 엘리베이터 부분 H=13.7m~29.5m · 연결부 부분 H=14.7m~23.3m · 냉각탑 및 공조실 부분 H=17.6m ~27.6m
				길이(m)	36.0	증)17.9	53.9		
				폭(m)	28.0	증)5.1	33.1		
				높이(m, 지하)	15.4~30.0	-	13.5~29.5		
세부 사항	기정			변경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점검구,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185.0㎡, H=24.4m~30.0m - 지하부 : A=469.0㎡ (지상중복 120.0㎡), H=16.5m~24.4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8.0㎡, H=15.4m~22.8m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292.6㎡ (증:107.6㎡), H=24.5m~29.5m - 지하부 : A=637.6㎡ (증:168.6㎡) (지상중복 204.4㎡), H=13.5m~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감:5.3㎡), H=15.4m~22.8m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 면적 변경 - 6,240.0㎡ → 6,259.4㎡ (증 19.4㎡, 0.3%증가)	○ 면적 변경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의견 반영을 위한 철도시설의 선형변경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 면적 변경 - 5,719.0㎡ → 5,998.5㎡ (증 279.5㎡, 4.9%증가)	○ 면적 변경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의견 반영을 위한 철도시설의 선형변경

㉠ 공간시설

①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장사동 142	1,737.3	-	1,737.3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90-20	668.1	-	668.1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41-1	1,192.4	-	1,192.4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57-3	2,301.5	감)3.6	2,297.9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35-48	517.2	-	517.2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81-31	757.3	-	757.3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충무로4가 112-1	371.0	-	371.0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 : 생략 (재정비촉진계획 도서와 같음)

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세운 6-3-1,2구역) 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가. 촉진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 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6-3구역	6-3-1,2구역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4,845.0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6-3구역	6-3-1,2구역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4,707.3	도시환경정비사업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6-3-1,2구역)			14,845.0	감)137.7	14,707.3	100.0	-
도시계획 시 설 등	6-3-1,2구역		4,664.9	증)10.4	4,675.3	31.8	-
	녹지	6-3-1,2구역	594.5	감)3.6	590.9	4.0	-
	도로	6-3-1,2구역	4,070.4	증)14.0	4,084.4	27.8	-
택 지 (획 지)	6-3-1,2구역		10,180.1	감)148.1	10,032.0	68.2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845.0	감)137.7	14,707.3	100.0	-
일반상업지역	14,845.0	감)137.7	14,707.3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구간	연장(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2,700 (130)	양측12	64,800 (1,634)	건교부고시 290호(73.7.4)	을지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목정동~종로4가	900 (78)	양측12	21,600 (977)	건교부고시 290호(73.7.4)	목정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태평로~광희로	2,700 (19)	양측12	64,800 (217)	건교부고시 290호(73.7.4)	태평로지구

※ ()는 대지 내 면적임

• 방화지구 결정조서 (사업시행인가시 폐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0)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 원남동로터리간	27,345 (0)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배오개길

※ ()는 대지 내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변경)

① 교통시설

■ 도로(변경)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삼풍상가 데크보행 연결통로 중복결정 (폭 4.6m)
변경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 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	증)155.70	155.70	-	
				길이(m)	-	증)33.90	33.90		
				폭(m)	-	증)3.00~5.05	3.00~5.05		
				높이(m)	-	증)25.50~38.00	25.50~38.00		
세부 사항	기정			변경					
	-			입체적 결정범위 1.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 지상부(1F) A=104.81㎡, H=25.50 ~ 30.40m - 지상부(2F) A=44.48㎡,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 H=33.55 ~ 38.00m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 (면적 : 증)155.70㎡	○ 면적 변경 -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설치

■ 철도

• 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40.0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
변경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 출입구 면적 변경 : 6,240.0㎡ → 6,259.4㎡ (증 19.4㎡)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719.0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변경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 출입구 면적 변경 : 5,719.0㎡ → 5,998.5㎡ (증 279.5㎡)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철도 입체적결정 변경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58.0	증)11.7	69.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5호선)
				길이(m)	9.6	감)1.0	8.6		
				폭(m)	8.9	증)1.1	10.0		
				높이(m, 지하)	19.7~27.5	-	14.6~30.4		
			기정	변경					
세부 사항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5.0㎡, H=24.5m~27.5m - 지하부 : A=58.0㎡, H=19.7m~24.5m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9.3㎡ (증:4.3㎡), H=24.5m~30.4m - 지하부 : A=69.7㎡ (증:11.7㎡) (지상중복 19.3㎡), H=14.6m~24.5m					
변경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542.0	증)186.5	72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2호선) (기정)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6.5m~28.0m · 연결부 부분 H=16.2m~24.4m · 냉각탑 부분 H=25.5m~30.0m (변경)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3.6m~29.0m · 엘리베이터 부분 H=13.7m~29.5m · 연결부 부분 H=14.7m~23.3m · 냉각탑 및 공조실 부분 H=13.5m ~27.6m
			길이(m)	36.0	증)17.9	53.9			
			폭(m)	28.0	증)5.1	33.1			
			높이(m, 지하)	15.4~30.0	-	13.5~29.5			
			기정	변경					
세부 사항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점검구,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185.0㎡, H=24.4m~30.0m - 지하부 : A=469.0㎡ (지상중복 120.0㎡), H=16.5m~24.4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8.0㎡, H=15.4m~22.8m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292.6㎡ (증:107.6㎡), H=24.5m~29.5m - 지하부 : A=637.6㎡ (증:168.6㎡) (지상중복 204.4㎡), H=13.5m~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 (감:5.3㎡), H=15.4m~22.8m					

• 철도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 면적 변경 - 6,240.0㎡ → 6,259.4㎡ (증 19.4㎡, 0.3%증가)	○ 면적 변경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의견 반영을 위한 철도시설의 선형변경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 면적 변경 - 5,719.0㎡ → 5,998.5㎡ (증 279.5㎡, 4.9%증가)	○ 면적 변경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의견 반영을 위한 철도시설의 선형변경

②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57-3	2,301.5 (594.5)	감)3.6	2,297.9 (590.9)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2014.3.27)	-

※ ()는 대지 내 면적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당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이하 여백)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6-3-1,2 구역	14,845.0	대지	10,180.1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21	-	-	121	-	-
변경	6-3-1,2 구역	14,707.3	대지	10,032.0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21	-	-	121	-	-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6-3-1,2 세운 구역	14,845.0	-	10,180.1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80%이하)	904%이하	90m 이하		
변경	6-3-1,2 세운 구역	14,707.3	-	10,032.0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80%이하)	926%이하	9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 당 사 항 없 음								
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센티브 항목		적용내용				완화량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 및 집회시설 도입시				10%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가로활성화 용도 (소매점포, 근생시설 등) 01층 도입시				30%			
		창조적 도시디자인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10%			
		도심산업진흥시설		도심특화산업 수용				10%			
		친환경개발		벽면녹화				10%			
		옛길 흔적남기기, 옛길보전 등		옛 흔적남기기				형태보전		18%	
								흔적표시		6%	
		추가 세입자 대책 수립		추가 세입자 대책 수립 시				대체영업장		50%	
								우선임차권		30%	
		합 계		-				174%			
		- 인센티브를 받는 문화시설, 도심산업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항 후 H 용도로 임의 전환 할 수 없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관할 구청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인가조건 사항으로 용도를 지정토록 하겠음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		= [1.3 × (기반시설제공면적 ÷ 제공 후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1.3 × (1,515.7 ÷ 10,032.0)] × (600+174) = 152.03% (적용 : 152.00%)							
		최고높이 (공공시설부지 제공)					= 기준높이 X (1 + 기반시설부지 제공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 80 X (1 + 1,515.7 ÷ 10,032) = 92.09m (적용 : 90.00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축한계선		을지로변		배오개길		내부도로(8m 초과)				
	기정		5m		5m		3m				
	변경		5m		5m		3m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아. 정비사업 시행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후 4년 이내	더유니스타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취약요인 없음	-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보호수 없음

「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차.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6-3-1,2구역	-	14,845.0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0,180.1	-
변경	6-3-1,2구역	-	14,707.3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10,032.0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타. 세입자 대책

「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③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 6-3-1,2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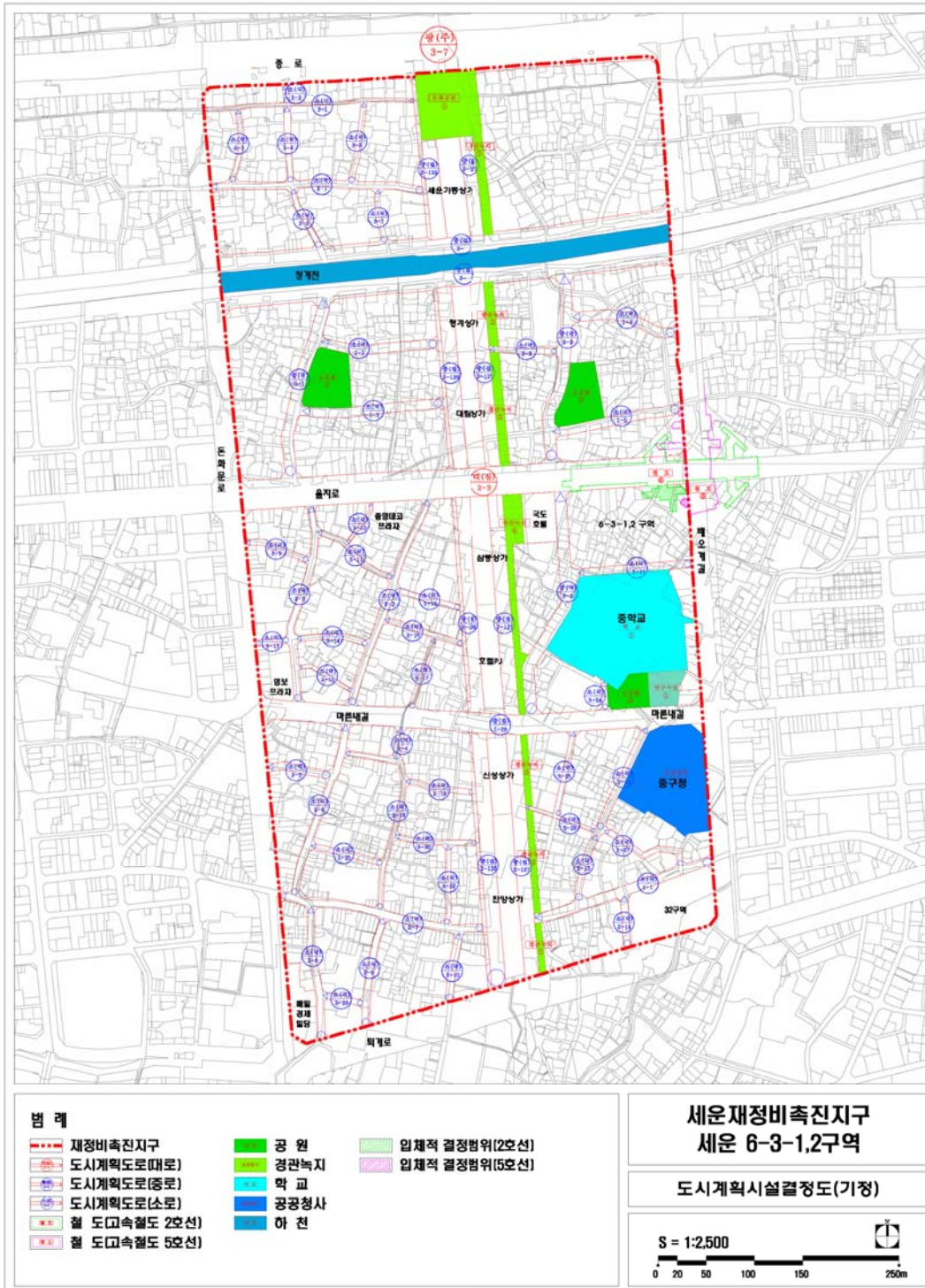
④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서류(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⑤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511)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8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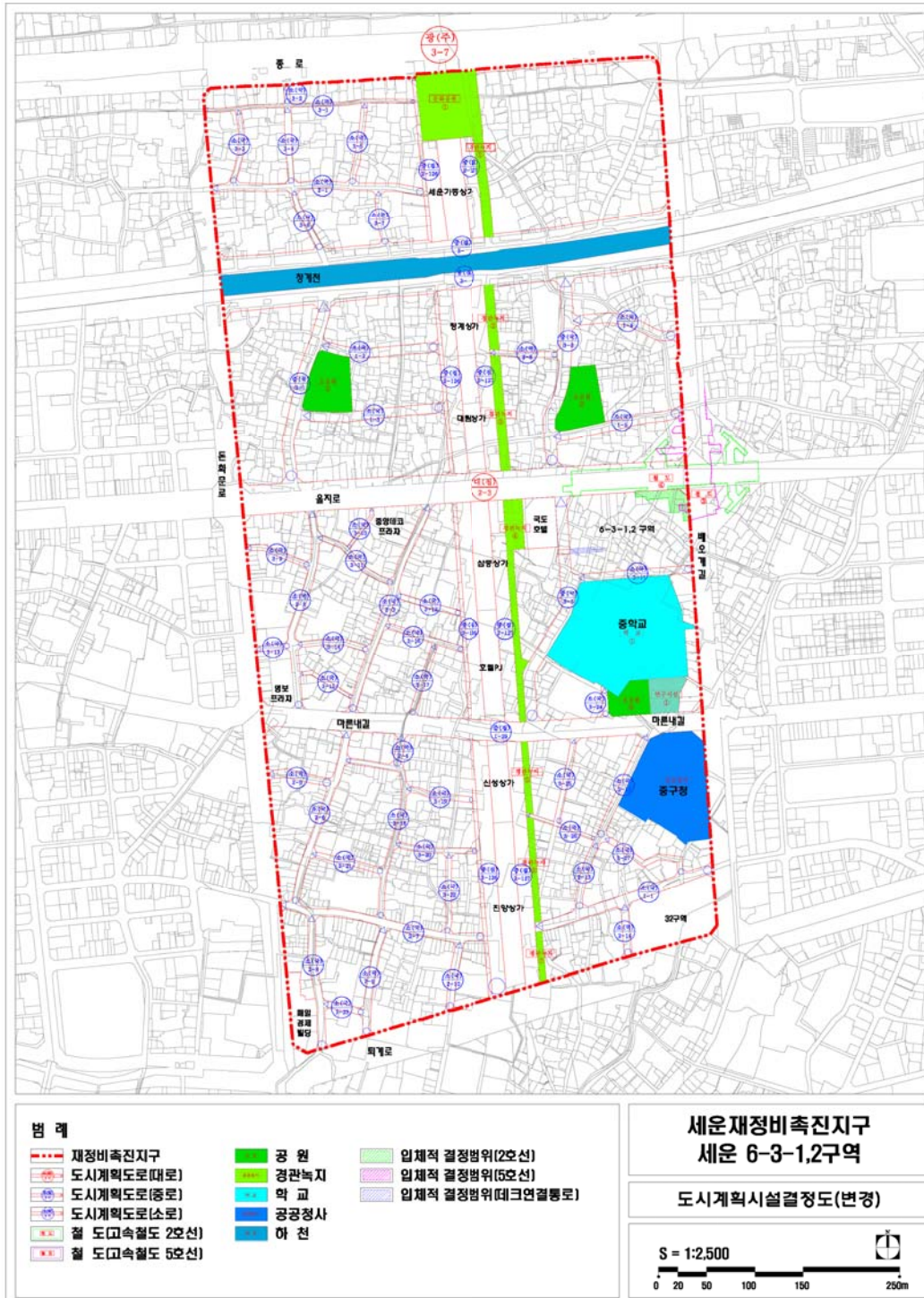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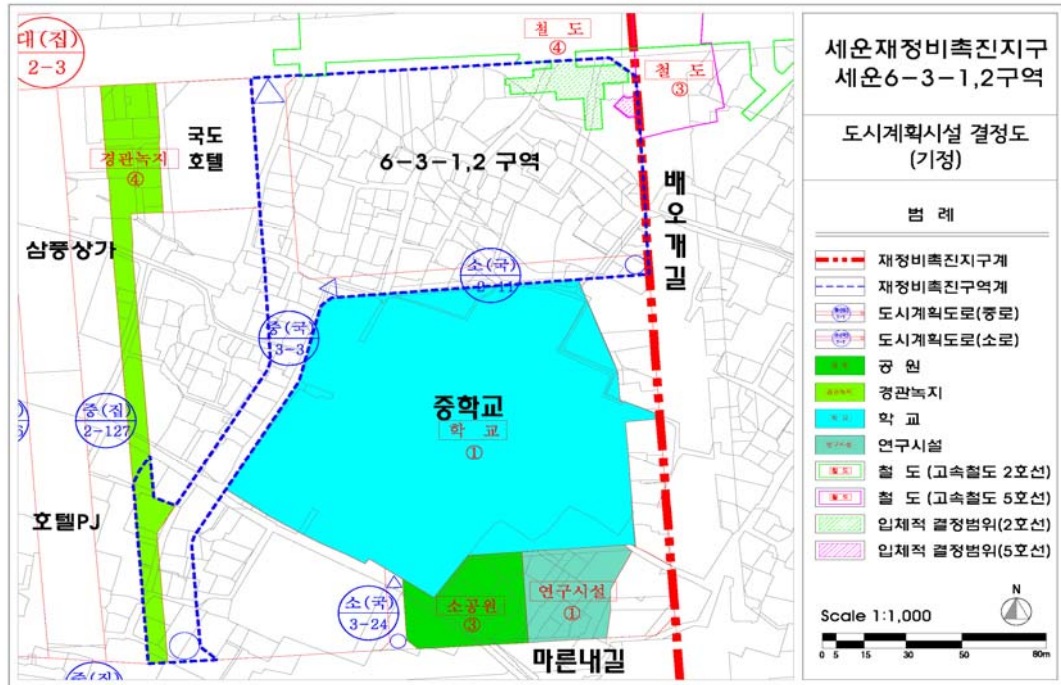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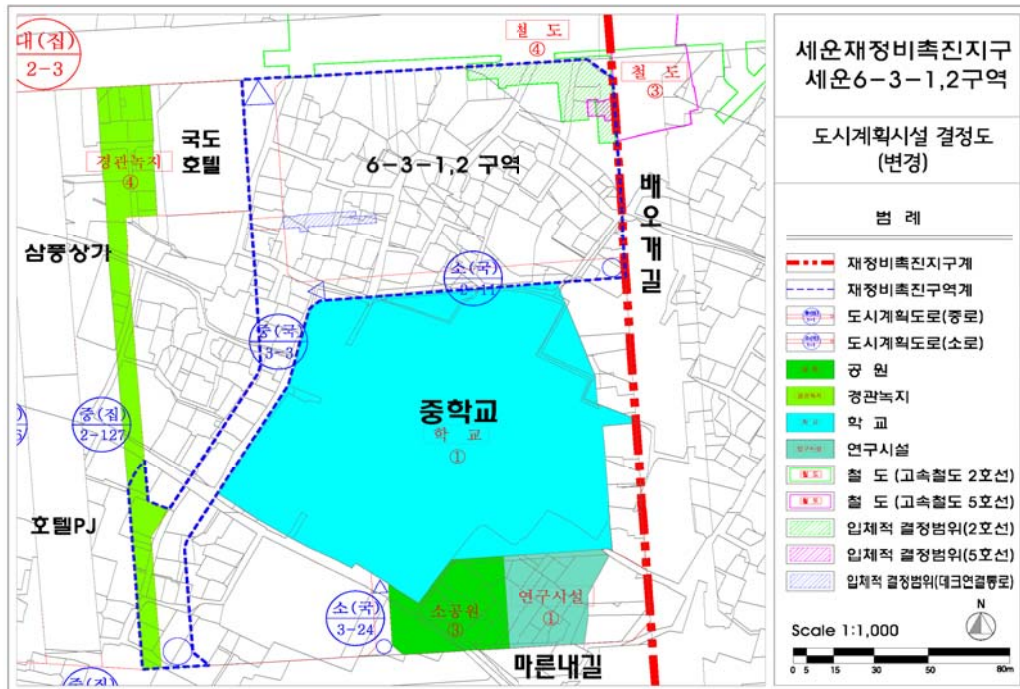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 6-3-1,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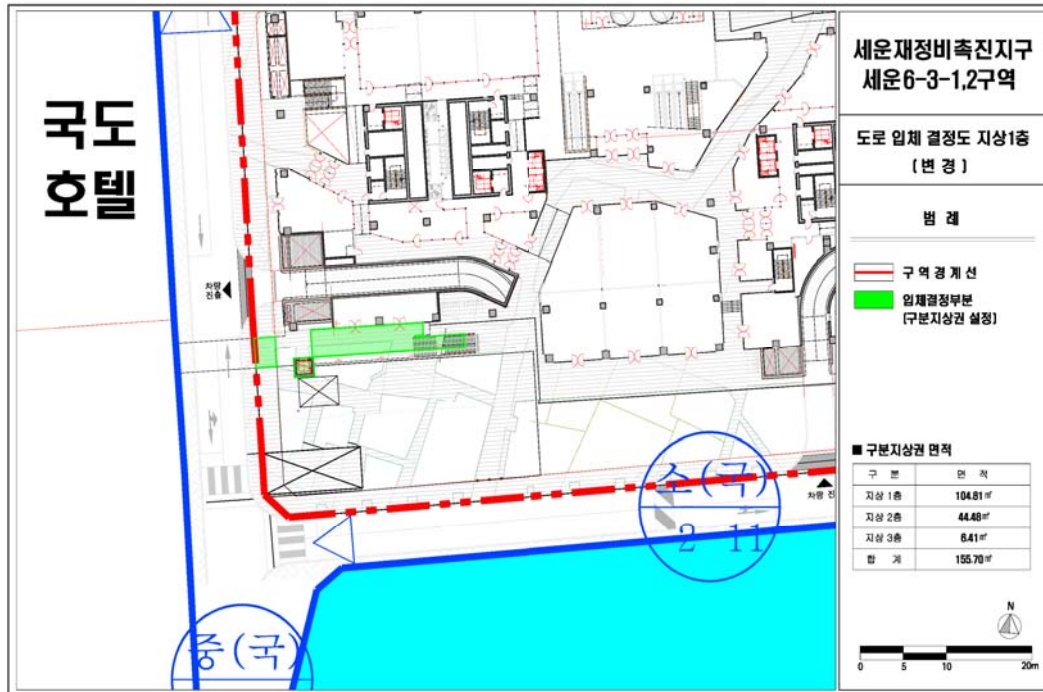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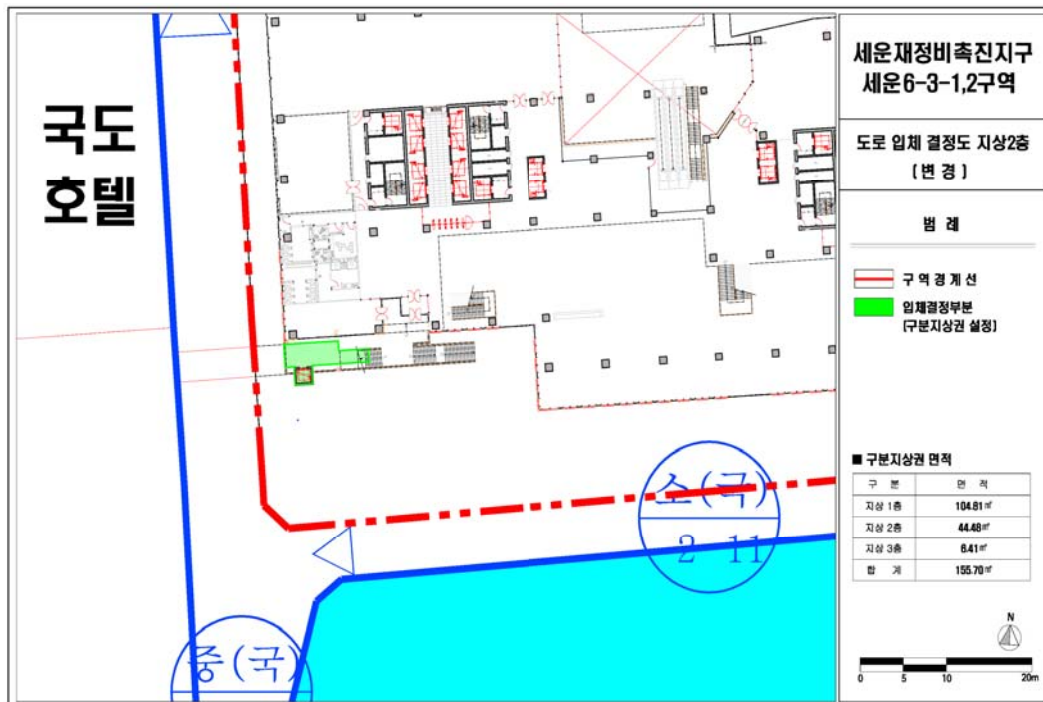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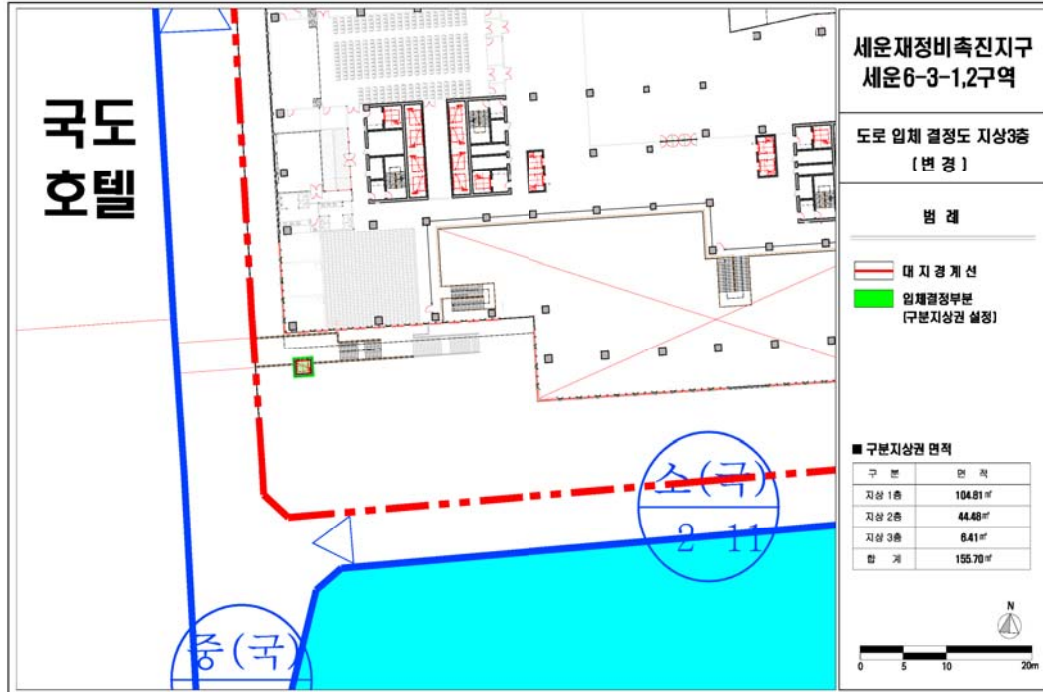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지상1층 평면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지상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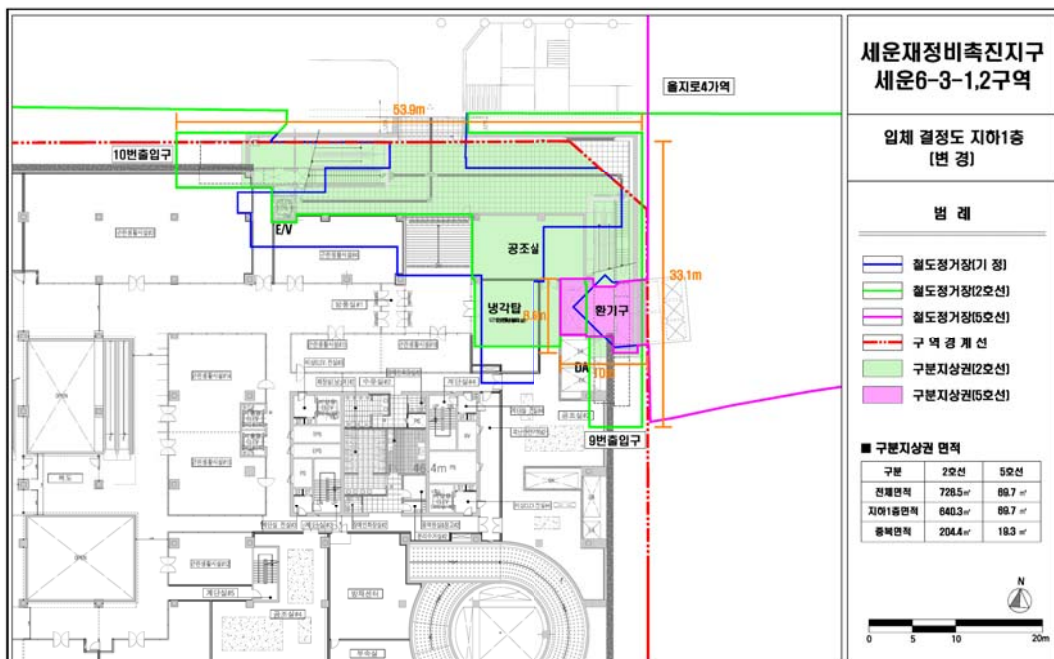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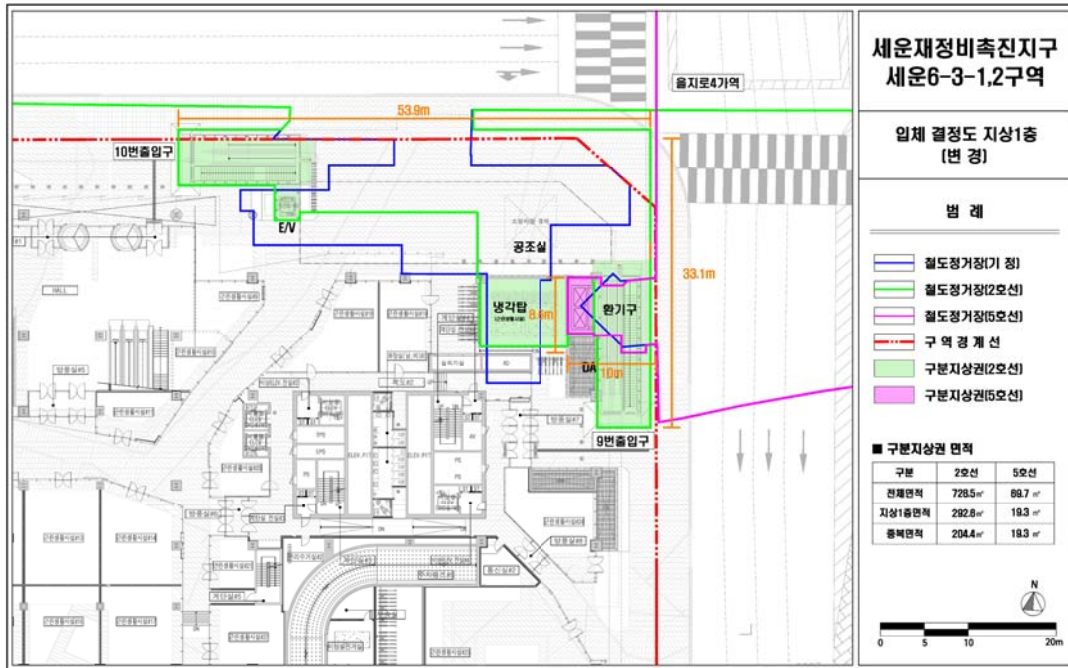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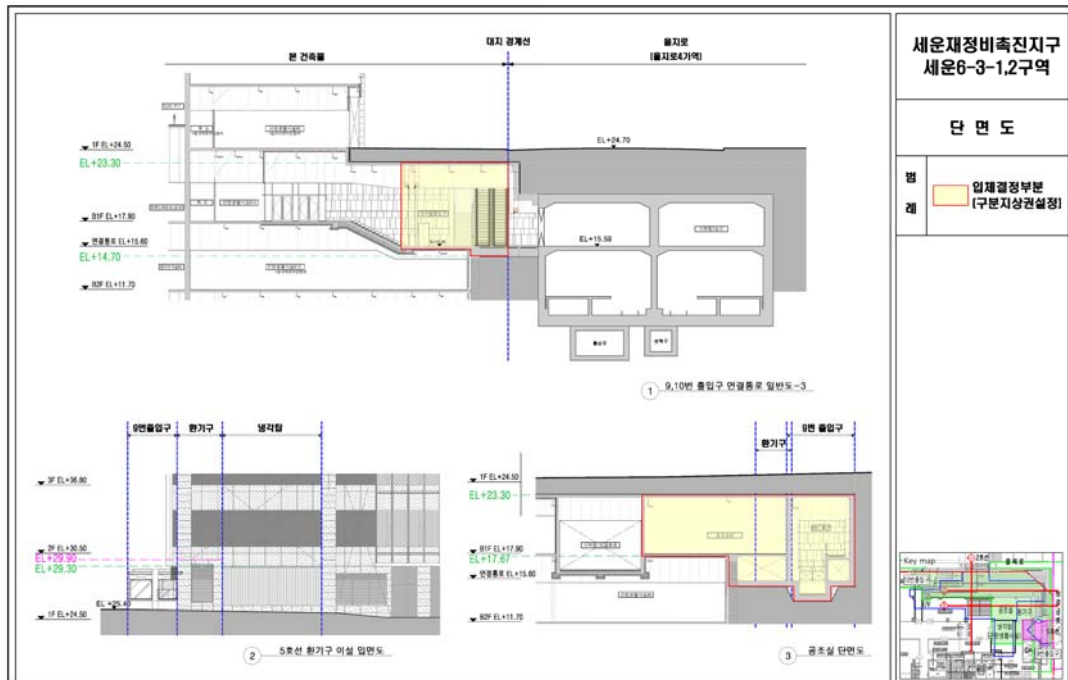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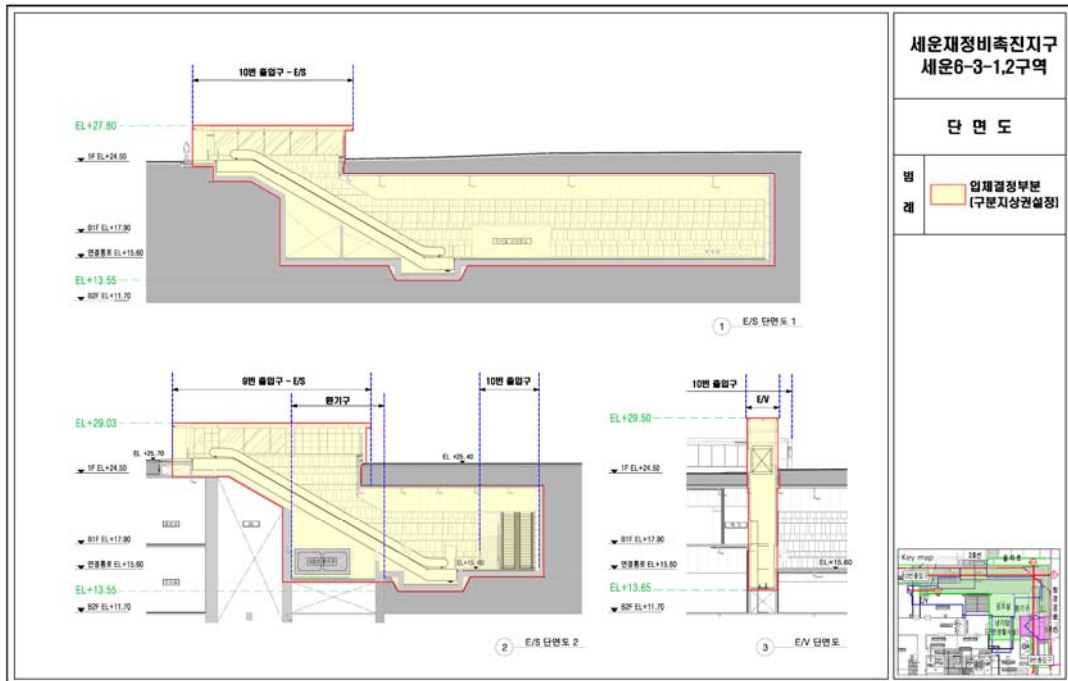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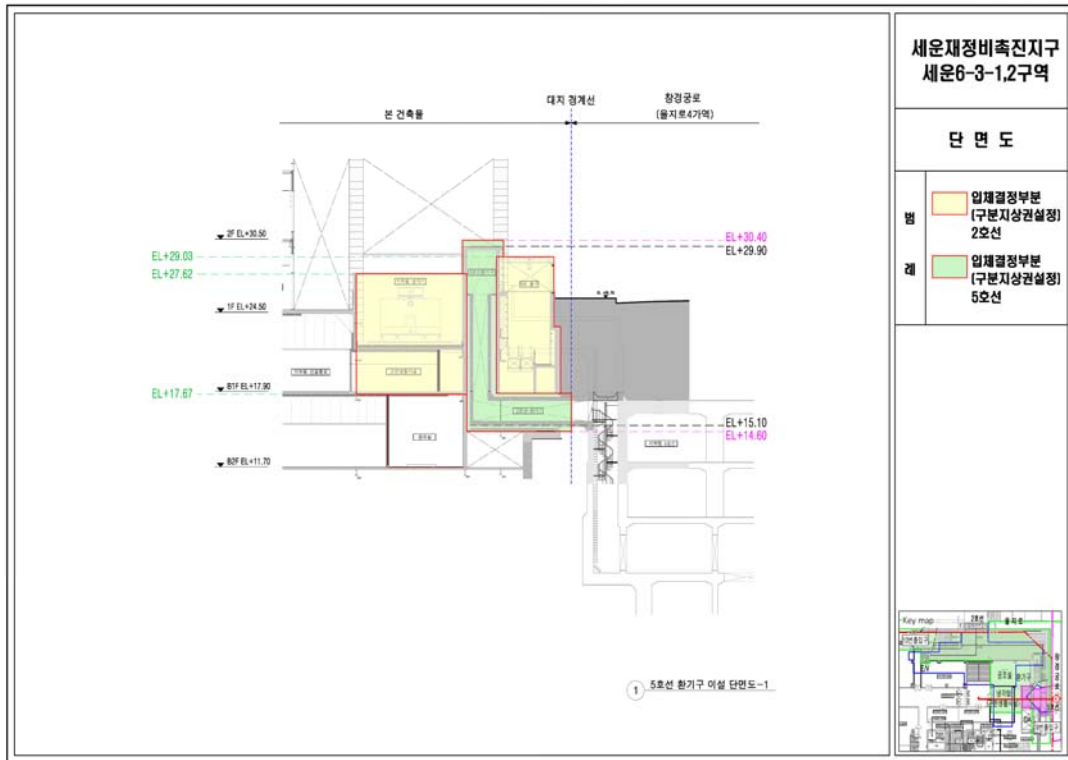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단면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7호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지정고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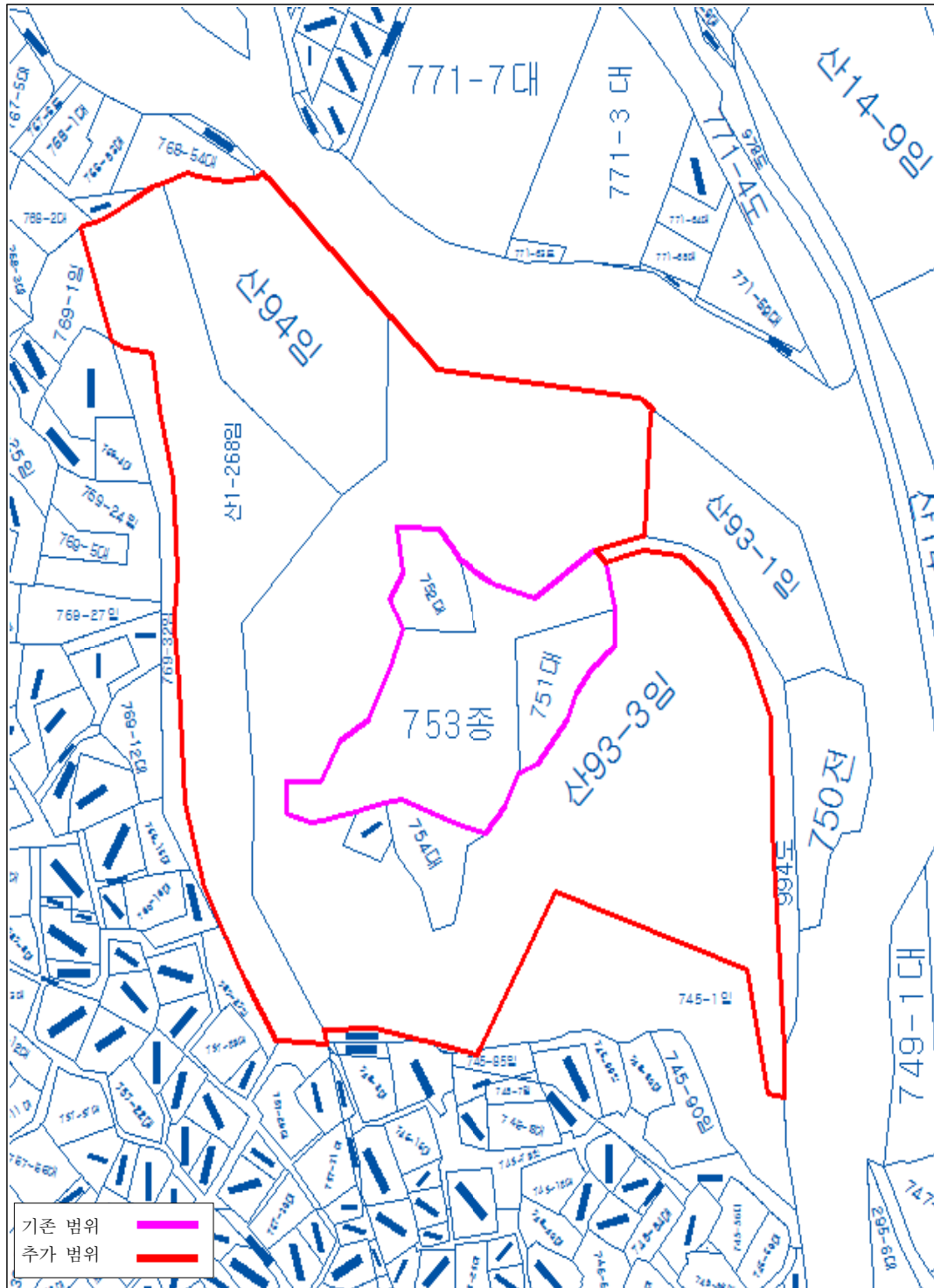
1.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대상사찰 : 경국사, 호암사, 도안사
2. 지정일자(고시일자) : 2017. 11. 9.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22)
 - 성북구 문화체육과(☎ 02-2241-2605)
 - 금천구 문화체육과(☎ 02-2627-1452)
 - 노원구 문화과(☎ 02-2116-3787)

4.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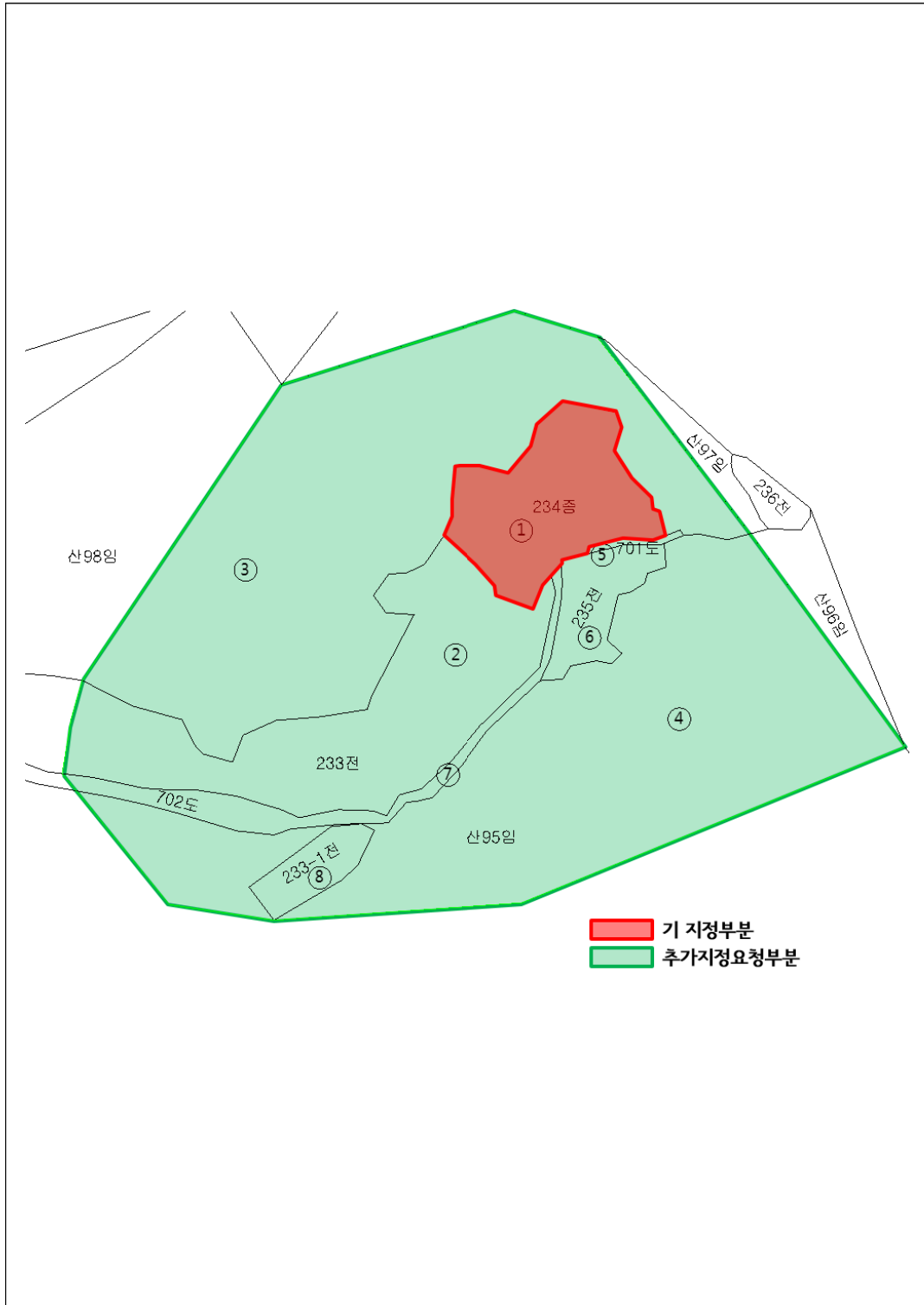
연번	사찰명	사찰 소재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경국사	계	5개 필지	21,874	21,874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53	정릉동 754	456	456	
			정릉동 산1-268	4,261	4,261	
			정릉동 산93-2	99	99	
			정릉동 산93-3	14,281	14,281	
			정릉동 산94	2,777	2,777	
2	호암사	계	7개 필지	52,105	18,86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4	시흥동 233	3,993	3,187	
			시흥동 233-1	340	340	
			시흥동 235	545	545	
			시흥동 701	30	30	
			시흥동 702	684	515	
			시흥동 산95	31,736	6,344	
			시흥동 산98	14,777	7,904	
3	도안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상계동 산155-1	426,942	10,186	

5. 지형도면

가. 경국사



나. 호압사



다. 도안사

토지 소재	노원구 상계동 산 155-1번지 2 필	축척	1 6000
측량자	2017년 7월 4일	측량성괴도	2017년 7월 4일
	지적기사 이상심 (인)	작성자	지적기사 장석호 (인)

산155-1 필



현황 표시

범례	명칭
—	의뢰인 지정선
—	아래반칸

면적 표시

지번 부호	면적(㎡)
산155-1 가	416756
나	10186
산155-1	426942
아래반칸	

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7월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점장 인

비고	이 측량성괴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29호

2017년도 제15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7. 10. 24.(화) 10:00 ~ 12:3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5건 9작품 (조각 9)
- 라. 심의결과 : 승인 6작품, 부결 3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성동구 e편한세상 신금호	조각	아침의 時-prologue	조건부 ○		노란색 띠부분을 촘촘히 하여 안정성 확보 요망
1-2		조각	천리안-Ⅱ	조건부 ○		하단 화강석 부분의 안정성 확보 (두께가 평면과 일치하게)
2-1	강남구 삼성생명	조각	사물의 꿈-생명나무	○		
2-2		조각	생명이 무럭무럭	○		
3-1	송파구 문정 힐스테이트	조각	벤처맨-세계를 향하여		○	유사작 다수
3-2		조각	을-화합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4-1	은평구 녹번 제1-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말을 찾아서	조건부 ○		상단의 조형물과 좌대가 조화롭게 설치 요망 (좌대 고흥석 계열 사용)
4-2		부조	박석애기+2017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5	강서구 서브원 마곡 호텔	조각	'무한주' Endless Column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0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장

1. 공 고 명: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2017. 11. 09. ~ 2017. 11. 23.(15일)
3. 양수이유: 태양광발전소 매각에 따른 양도·양수
4.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서울-336호(2017-02)	좌동
허가일자	2017. 02. 21.	좌동
발전소명	호성 태양광발전소	좌동
대표자	전영준	백순이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58 (건축물 옥상)	좌동
설비용량	15.75kW	좌동
양수인가일	2017. 10. 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장

조 합 현 황			취소이유	취소근거	취소일
인가번호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정관)			
2014-11	헤인 의료생활협동조합 (황인철)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24, 상원빌딩4층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4호	2017.10.30.
2015-1	나우누리 의료생활협동조합 (노태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98, 1~3층 (신림동, 경성빌딩)			

※ 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2133-53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하고자 동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대상자

조합명	대표자	주사무소(정관)
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	전완식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2, 2층(독산동, 삼미뉴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 14:00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3층) * 서울 중구 무교로21 3층(더익스체인지빌딩)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24일(금) ~ 2017년 12월 7일(목)
-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하여 우편제출

7.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관보

8.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공정경제과(☎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코씨앤에이
2. 대 표 자 : 김성준(1980. 7. 4.)
3. 영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길 13, 3층 302호, 5층 501호
(신당동, 유현빌딩)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5호
6. 등록일자 : 2017.10.30.
7. 전화번호 : 02-798-54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제니스개발	송한규	2017.10.10	서울170093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7층 (역삼동, 허버허버빌딩)	500,000	신규 등록
2	정의정합건설(주)	이성준	2017.10.19	서울170094	성동구 광나루로 130, 301호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	1,545,000	신규 등록
3	(주)팜스웰바이오	추연우 장영진	2017.10.25	서울170095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8층 (가산동, 하이힐빌딩)	12,330,823	신규 등록
4	(주)에이치티에이치 피에프브이	구본권	2017.10.24	서울150022	강남구 삼성로95길 11, 11층 (삼성동, 시몬스벤처빌딩)	기타	폐업
5	현대비에스앤씨(주)	이휴원	2017.10.17	서울160052	중구 퇴계로 272, 201호 (장충동2가)	전문인력 부족	폐업
6	(주)메디치그룹	강호남	2017.10.12	서울080451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지하101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사업부진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방서일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35번길 9-**, **호 (송의동, **빌라)	일시: 2017-09-18 04:30 장소: 마곡중앙로 차량: *****1926 내용: 제한 길이 3.8m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예산안 (1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산담당관
동의안 (2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관리담당관
	3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산관리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운수종사자 실명제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을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기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다음조건을 갖춘 기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표준 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앱 등이 개발된 고급택시의 대체미터기와 서울특별시장이 미터기 장착의무를 면제한 심야콜승합에 이용하는 대형(승합)택시에 예외를 인정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 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대체미터기(앱 등)를 사용하는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1개월간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 및 IC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패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선·후불교통카드 인식 터치패드(교통카드 리더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다만,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위치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음주자 승무금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 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차고지 밖 교대 금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여서는 안 된다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 우. 단,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 고지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 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단,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해 처분함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 내부 및 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 송 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내부의 광고부착물은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호출안내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 외부부착에 관한 사항 도 광고부착물 승인절차에 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 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개인택시 부제운행	【 내 용 】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표시	【 내 용 】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부제표시방법 ○ 외부표시 -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운휴조, 조합명, 하이서울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 조는 오렌지색, “다” 조는 초록색, “라” 조는 보라색과 자주색(1,3번호표기), 수요 대응형 택시 ” 9 “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5만원 • 3회 : 2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 휴조, 고유발급 번호, 하이서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 규격 ◦ 양 측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 양 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 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 용한다. (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 용)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한 때, 파훼손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 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 착으로 간주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내 용 】 □ 대 상 : 택시 (택시요금표는 모범택시, 대형택시에 적용하되,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지정부착물 등 게시 및 갱신 ○ 규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105mm - 민원안내스티커 : 가로 85mm × 세로 105 mm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민원안내스티커 : 택시운전자격 증명과 함께 게시한다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옆문 손잡이 주변) - 택시요금표 : 오른쪽 뒷문 외부 (모범·대형택시에 적용하되,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 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 1차 : 5일 ○ 운수종사자 - 자격정지 • 1차 : 5일 • 2차 : 5일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 운행정지 • 1차 : 5일 • 2차 : 1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다만,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의 경우 전자적 매체기기를 통한 게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부당 시계의 할증 적용 등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어떠한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조치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규칙 [별표5] 위반사항 11, 다에 의한 운전자격정지 처분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택시 외부표시	【 내 용 】 □ 대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 택시표시등(방범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 빈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 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th>앞/뒷면바탕색</th><th>앞/뒷면글자색</th><th>옆면/윗면바탕색</th></tr> </thead> <tbody> <tr> <td>브랜드법인</td><td>SCN017</td><td>한강은백색</td><td>꽃담황토색</td></tr> <tr> <td>브랜드개인</td><td>한강은백색</td><td>파란색 / SCN019</td><td>꽃담황토색</td></tr> <tr> <td>일반택시</td><td>SCN017</td><td>한강은백색</td><td>꽃담황토색</td></tr> <tr> <td>개인택시</td><td>한강은백색</td><td>파란색 / SCN019</td><td>꽃담황토색</td></tr> </tbody> </table>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 정지 10일 -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5만원 • 3회 : 20만원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현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브랜드법인	서울	CARD TAXI BRAND		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		
	브랜드개인	서울	CARD TAXI BRAND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 모범 및 대형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2010.4.16.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따른다.							
○ 차량색상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정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브랜드 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 문자							
- 일반택시							
내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격		회사명 (H60mm×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럼, 콜센터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체, 서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호출 이행의무	【 내 용 】 ☐ 대 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 준수사항 : 호출서비스 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목에 의한 과태료 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 위반 사항 4호 가목에 의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법 제26조	○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포함) － 과태료 20만원 또는 － 택시운전 자격정지 ・ 1차 : 10일 ・ 2차 : 20일
친절 운행 이행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조치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적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적용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파” 호,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파”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0만원 ・ 3회 : 10만원
택시 청결의무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대로 택시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 1차 : 3일 ・ 2차 : 5일

구 분	현행	관련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 청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여야 한다. 2.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예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 너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 과태료 처분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운수종사자복장지정	【내 용】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하며,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는 정장양복 또는 지정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장복장 등 용모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택시 금지복장 〉 <table><tr><th>구분</th><th>금 지 복 장</th></tr><tr><td>상의</td><td>·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td></tr><tr><td>하의</td><td>·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td></tr><tr><td>모자</td><td>·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td></tr><tr><td>신발</td><td>·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td></tr><tr><td>기타</td><td>·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td></tr></table>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 1차 : 3일 · 2차 :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에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 너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8호, 법제94조제3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 과태료 처분		
교 육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 당일 특별근로(공가처리) 등 교육의무를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8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법 제94조제3항제4호,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3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부 칙	① (시행일) 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형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동 ***호 (왕길동, **연립)	일시: 2017.08.08. 10:19 장소: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난지한강공원 입구(월드컵대교밀) 내용: 축하중 12.7톤(2.7톤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하기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 (연수동, ****아파트)	일시: 2017.08.09. 07:09 장소: 마포구 도화동 마포대로 73도로 앞 내용: 축하중 11.85톤(1.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정택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4번길 **-*동 ***호 (고촌읍, **연립)	일시: 2017.08.10. 07:50 장소: 서대문구 신촌동 성산로 연대 남문앞 현저고가 32톤 내용: 총중량 36.8톤(4.8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한정욱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5 ***호 (연건동, *****)	일시: 2017.08.11. 16:14 장소: 서대문구 신촌동 성산로 연대남문앞 내용: 축하중 11.6톤(1.6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채희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8나길 * ***호 (수유동, **빌라)	일시: 2017.08.30. 13:51 장소: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월드컵 파크 7단지 정거장앞 내용: 축하중 11.4톤(1.4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이재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 ***동 ***호 (백석읍, *****아파트)	일시: 2017.08.30. 13:55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 고정초소 내용: 축하중 11.25톤(1.2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9.29. 납기일: 2017.11.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상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번길 *(도계동)	일시: 2017.06.17. 06:48 장소: 용산구 한남동 한남제1고가 남산1호터널앞 (한남제2고가 20톤) 내용: 총중량 24.1톤(4.1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7.25. 납기일: 2017.09.30.
홍순모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325번길 ***, *동 ***호 (금곡동, 대림하이츠)	일시: 2017.07.01. 10:18 장소: 중구 주자동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요금정산대 입구(한남제2고가 20톤) 내용: 총중량 24.85톤(4.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7.25. 납기일: 2017.09.30.
박성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07번길 ***	일시: 2017.06.28. 06:53 장소: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 남산관광 고가 끝지점 (한남제2고가 20톤) 내용: 총중량 31.95톤(11.95톤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7.25. 납기일: 2017.09.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호준, 허인	영업정지 3개월 (2017.12.01 ~ 2018.02.28)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현지 재료의 공급과 시공품질 실현 가능성 확인 등 업무소홀 - 공사 중 품질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파일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되고, 콘크리트도 설계기준에 부족한 강도로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며, 부실건축물 보강 및 설계변경 등 행정처리로 공사기간이 현저히 지연됨 -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제재조치 자문·법률비용과 시공 상태 현지조사, 검수비용 등으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하이리빙	서울-제88호	김석범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14층(소공동, 서울센터빌딩) (1577-2770)	소재지 (‘17.09.2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대치동, 하이리빙빌딩)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14층(소공동, 서울센터빌딩)
고려한백(주)	서울-제123호	백흥기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43, 2층(사당동) (02-522-5200)	소재지 (‘17.10.16)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32, (남현동)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43, 2층(사당동)
(주)대자연 코리아	서울-제870호	유국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9, 501호(봉천동) (02-3281-5252)	소재지 (‘17.10.2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210호(구로동,대릉 포스트타워1차)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9, 501호(봉천동)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열매상사	서울 후-제435호	김인자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58, (성내동) (02-472-4232)	소재지 (‘17.09.26.)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7길 10, (성내동)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58, (성내동)
알즈너 만세대리점	서울 후-제690호	서귀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238, (갈현동) (010-5517-4216)	전화번호 (‘17.04.05.)	010-5517-4216	010-5517-4256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나르샤코리아	서울 - 제682호	양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18층(서초동, 산학재단빌딩) (02-3452-7311)	'17.10.10.	영업부진
(주)비라이프 제이에스	서울 - 제687호	임준식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7길 7, 102,103호(역삼동, 반야빌딩) (02-2203-3000)	'17.10.10.	공제조합 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중량지사	서울 후- 제460호	한지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08, 7층(망우동, 이안빌딩) (02-432-8835)	'17.10.12.	개인사정
코리아나	서울 후- 제618호	권혜운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1, 5층(대현동) (02-393-6466)	'17.06.30.	매출부진
유니베라 창동대리점	서울 후- 제324호	이종우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가길 16, 303~304호(창동,킴프라자) (02-903-6268)	'17.10.18.	사망
마임신림 남부지사	서울 후- 제239호	유정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61, 4층(신림동) (02-875-3207)	'17.10.31.	개인사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8호
2017년도 제4차 서울시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용자신청요건
 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준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용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용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일 것
 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표준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3. 용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용자금의 한도 : 2017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나. 신용대출
 1)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용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 [조 합]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40만㎡미만 : 최대 4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 50만㎡미만 : 최대 5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 최대 60억원

5. 융자금 지원

가. 지원금액 : 금1,900백만원

※ 심의일 기준, 지원 가능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지급

다. 대출이자 : 담보대출 연 2.0%, 신용대출 연 3.5%

6. 융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2) 접수기간 : 2017.11.17(금)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융자금 신청서류 제출 : 2017.11.22(수)까지(자치구→서울시)

7. 융자지원의 부적격 및 취소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부적격처리를 할 수 있음

1)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심사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4) 수탁기관에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용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용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나. 조 합

- 1) 용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용자기간 만료시 용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용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 용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 용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별첨서식]
- 용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서 1부.[별첨서식]
-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 ▶ 최근 2년 이내 총회에서 의결한 한도내 지원(금액 특정, 서울시 용자금 한도내)
 - ▶ 용자금 상환 책임 부담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 각 1부.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 ▶ 용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 용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10.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

붙임 #2

정비사업 용자금 신청서식[자치구]

정비사업 용자금 (자치구)검토서

사업장명 (대표)			정비구역 위치		
구역유형	*일반구역/ 재촉구역	구역면적	m ²	조합원수	명
		건축연면적	m ²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		
용자종류	*신용 / 담보	용도	*운영비, 용역비 등	용자금액	원

검토항목	확인결과	검토의견
일반현황	○ 공공관리 대상구역 여부 : ○ 구역지정 일자 : ○ 조합(추진위) 최초 인가일 : ○ 조합(추진위) 최종변경인가일 : ○ 조합(추진위)동의율 : 000/000명 (%)	※일몰제 적용대상 구역여부 확인
정관변경 및 총회의결	○ 조합정관(추진위 운영규정) 개정 • 개정일 : • 의결수 : 000/000명 (%) ○ 자금차입 총회 의결 • 의결일시 : • 의결수 : 000/000명 (%) • 금액명시 :	※정관(운영규정)에 기재여부 확인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채무승계 - 용자금액 상환 ○ 자금차입 의결의 적정성 ○ 정관변경 및 총회의결 법적절차 준수 여부 등
용자신청 제한사유 해당여부	○ 정비구역 미지정 및 해제 대상구역 여부 : ○ 진행중인 소송 유무 : • 사건명 : • 소재지 : • 피고 : • 원고 : • 내용 : • 추진경과 - (※ 필요시 별지 작성) ○ 기타 용자지연 및 용자제한 요인 • ○ 해산동의서 징구여부 : • '17. 월 현재 징구율 %	○ 존립소송, 채권·채무 관련 소송 모두 기재 ○ 용자지원 적정 여부 등 검토의견

검토항목	확 인 결 과	검토 의견
일 몰 제 대상구역 융자신청 적정여부	○ 현재의 추진현황(*정확히 작성) • • ○ 향후 추진계획 • *00년0월0일~0월0일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00년0월0일~0월0일 : 조합설립 창립총회 ○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지연요인 등) • • ○ 일몰제 적용기간 내 조합설립 신청 가능여부 • ○ 기타사항 •	○ 일몰제 적용시점을 기산하여 잔여기간 내 단계별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 검토의견
정비사업 단 계 별 정체여부	○ 최근 2년동안 총회 미개최 여부 ○ 추진위 최초 승인이후 3년 경과 여부 ○ 조합설립후 4년동안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여부 ○ 사업시행인가후 4년동안 관리처분계획 미인가 여부	※ 개최일자 기재
융자금 운용 적정성 여부	○ 직전 자원받은 융자금 적정 집행여부 ‘융자금 집행내역 사후검증 보고’ 확인필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조합인가서 또는 추진위인승인서, 총회회의록,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부무 등 ※ 총회회의록 및 조합정관, 추진위운영 규정 등 전체자료 제출	○ 구비서류 적정여부 확인
종합의견	○ 정비사업 진행상황 및 최근 정비사업 추진실적 ○ 주민동향 ○ 자금조달실태 및 융자 필요성 ○ 사업진행 전망(추진속도, 추진사항, 추진의지, 추진율 등) ○ 정비업체, 시공사 등 협력업체명 등 ※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적 의견 작성(자세히 작성)	

○○정비사업 구역 현황도

- 정비구역 현황도 첨부 -

정비사업 용자금 신청서식[추진위원회 · 조합]

[별지 제33호 서식]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자금 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
2. 용자금 사용계획서 및 1부.[별첨서식]
3. 용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
4. 자금차입 총회결의 회의록(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속기록) 1부.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 사본 1부.
6.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용자금 사전 검토서식]

2017년도 제3차 정비사업 용자금 사용 계획서

□ 정비구역 및 용자금 신청현황(정비구역 : ○○구 ○○동 ○○-○○번지 일대)

[사무실 소재지 : / 대표 (☎ -)]

정비구 역현황	구역 지정일	조합 등 승인(인가)일	동 의 율(%)	구역면적	건축 연면적
		※최초,최종 모두 기재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m ²	m ²

용자 신청 및 집행 현황	구 분 (단계별)	기지원액 (백만원)	집행잔액 (백만원)	금 회 신 청 액 (백만원)	용자금 집행계획(비율)			
					사업(용역)비	조합 등 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비 고
추진위								
조 합					(%)	(%)	(%)	

□ 용자금 사용 계획

그 간 정비사업 추진현황	○ — ○ — ○ — ※ 그 동안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중심으로 정리해주세요.			
추진단계	정비사업 추진단계 '17.9월 현재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 정비구역 추진단계 해당란에 √ 표기			
용 자 금 사용계획	※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정과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 별첨 '소요경비 내역서' 에 산출내역 등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 — ○ — —			
향 후 추진계획	○			
소송내역	※ 존립소송, 채권채무 관계 소송 ○			
기 타				

2017년 정비사업 용자금 소요 경비내역

(금액 : 천원)

구 분	집행명목(적요)	소요경비	산출기초	비 고
용역비				
건축심의 관 련 용역비				
기 타 용역비				
사업비				
운영비				
총 계				

[용자금 사후 검증서식]

정비사업 용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

①집행내역 검증결과	적 정 / 부적정(적정집행 60% 이하 : 부적정)[자치구]			
정비사업 추진단계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구체적인 추진과정	※ 구체적인 용자금 사용 명목 기재			
용자금 내역	※용자금 대출일자, 대출금액 기재			
용자금 집행내역 (검 증 결 과)	구 분	사업(용역)비	조합등 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신 청 시	(%)	(%)	(%)
	실제집행	(%)	(%)	(%)

연번	당초 용자금 집행계획		실제 용자금 집행현황		증 · 감	②적정집행 여부확인 [자치구]
	집 행 명 목(적요)	집행계획(원)	집 행 명 목(적요)	집행금액(원)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작성자 : 조합/추진위 (인)

확인자 : 구청 과 (인)

※ 자치구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하며 증빙자료 제출(조합 등→ 자치구)

※ '① 집행내역 검증결과, ② 적정집행여부 확인' 은 조합 등에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후
반드시 자치구에서 기재후 제출(자치구→서울시)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432호(1963.07.01.)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66호 (2009.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 2017-531호(2017.07.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66호(2017.8.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남창동 64-1 ~ 남창동 205-12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205-187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남창동64-1~남창동 205-12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 및 물건 변경없음(불임생략), **영업권 변경**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관계서류등 상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로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로시설과(☎3396-6105), 가로환경과(☎3396-60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연번	초						변경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 호	수량	성명	소유자 주 소	이해관계인 종류	성명	주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 호	수량	성명	소유자 주 소	이해관계인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0	복제 공장	대광사	1식	박형수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0												
2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음식업	신의주참쌀 순대	1식	최영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3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음식업	엄마순백반	1식	김화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4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인형 판매업	동강	1식	김성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5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창고		1식	한명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9-2 남도종합상가 2층 63호												
6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0	창고		1식	안윤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0												
7	영업권 누락						영업권 제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50	제 병 공장	금우사	1식	김남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3, 302호(천연로, 산경아파트)					
8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8	배관 설비	남창설비	1식	남성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44 경서아파트 703호					

위 치 도



◆ 용산구고시 제2017-13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2호(1793.12.1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인접 위치하고 있는 성심여고와 성심수도회간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의 상호 교환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선형을 변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고등학교	용산구 원효로4가 1-1 외 3필지	22,840.7	-	22,840.7	1973.12.10 (서고시192)	

□ 변경 사유

시설명	내 용	사 유
성심여자 고등학교	·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과 인근 인접 성심수도회 간 토지 활용 가치가 없는 부지의 동일면적(120㎡) 교환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선형 변경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변경 없음)

(2)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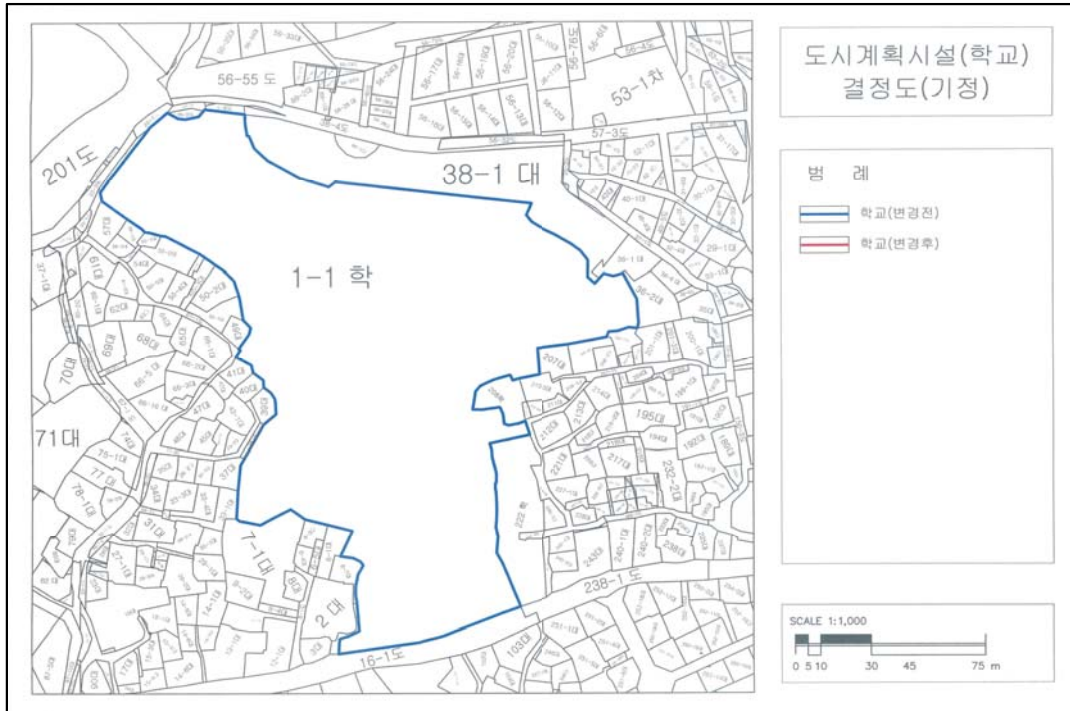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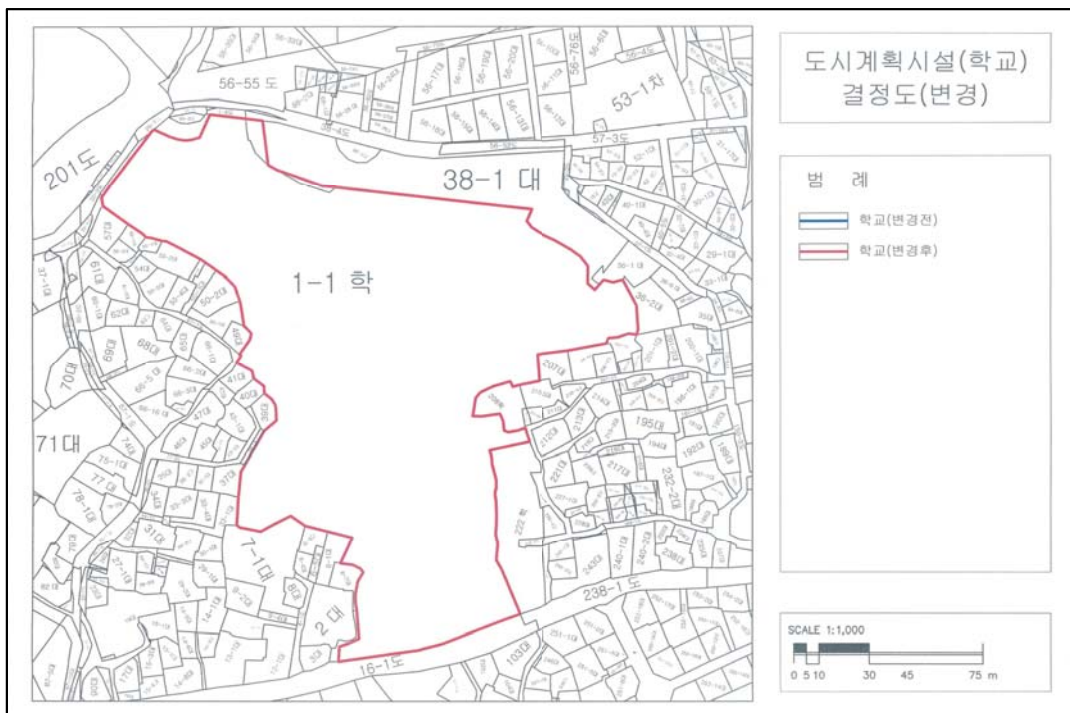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39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지형도면
- 기정



- 변경



◆ 강북구고시 제2017-14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561(1987.8.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231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45호(2017.3.30)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1136호(2017.10.19.)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901-69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북구 미아동 산108-5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다. 사업의 내용: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 모 변 경: 당초 토지보상4,529㎡ → 변경 토지보상 3,100㎡(감1,429㎡)

마. 사업의 시행자: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서

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변경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주	소	성명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323.9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02동 601호(시당동,극동아파트)		김순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02동 601호(시당동,극동아파트)		김본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0동 1804호(장안동, 장안현대 홀타운)		전병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0동 1804호(장안동, 장안현대 홀타운)		박정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길 18-1		김창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 연희대우 아파트 101-502		이숙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6-19,4 층 401호(반이동)		남궁춘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127동 402 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양운복				
					4529분의 109.0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외감천로529번길 100-15		이삼량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4529분의 92.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405동 1703호(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김영숙				
					4529분의 214.8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솔미2길 147-3		홍양표				
					4529분의 231.3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60, 804동 1503호(죽전동,도담마을)		백임순				
					4529분의 108.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9가길 9-15(명륜4가)		채규성				
					4529분의 99.17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550번길 102-110, 3층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37-12, 401호(삼성동)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25길 28, 116동 1402호(정릉동,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윤숙자				
					4529분의 125.6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기로 1665번길 47-65		최성자				
					4529분의 214.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2, 402동 1002호(시동, 현대2차아파트)		이원영				
					4529분의 107.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5, 105동 208호(하늘빛 아파트)		강정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로 23길 20 라동 403호(신길 동,신미아파트)		우종인	2016.4.18.압류 (38세금정수과- 9328)	서울특별시	압류		
					4529분의 185.11		강원도 원주시 삼광2길 29(봉산동)		엄상옥					
					4529분의 105.7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동 1001호(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4529분의 109.0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0길 55 (시흥동)		우정석					
					4529분의 216.0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20-7		장정숙					
					4529분의 11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19동 302 호(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백재영					
					4529분의 323.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1412동 1003호(동천동, 한빛마을레미안인 스트팰리스4단지)		정우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동아상 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4529분의 215.8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95번길 40(금오동)		박명숙	2007.5.18.압류 (세무과-1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2006.9.28. 가압류 결정 (2006카단6035)	의정부농업 협동조합	압류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주	소	성명	관계	
					4529분의 96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6동 301호 (내손동,포일자이아파트)				신철성		
					4529분의 115.7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45번안길 1, B01 호(광명동,신진빌라)				박신현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주	소	성명	관계	
	1필지		4,529	3,100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3,100	4529분의 323.9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02동 601호(시당동,극동아파트)				김순자		
					4529분의 323.9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02동 601호(시당동,극동아파트)				김본기		
					22645분의 624.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107, 110동 1804호(장안동, 장안현대 홀타운)				전병희		
					22645분의 416.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107, 110동 1804호(장안동, 장안현대 홀타운)				박정준		
					4529분의 115.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길 18-1				김창례		
					4529분의 323.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 연희대우 아파트 101-502				이숙현		
					4529분의 99.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6-19,4 층 401호(방이동)				남궁춘화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주 소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4529분의 109.0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127동 402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양윤복				
					4529분의 109.0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529번길 100-15		이삼량				
					4529분의 92.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405동 1703호(도곡동, 도곡핵심아파트)		김영숙				
					4529분의 214.8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솔미2길 147-3		홍양표				
					4529분의 231.3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60, 804동 1503호(죽전동, 도담마을)		백임순				
					4529분의 108.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9가길 9-15(명륜4가)		채규성				
					4529분의 99.17		경기도 양주시 정흥면 호국로 550번길 102-110, 3층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37-12, 401호(삼성동)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25길 28, 116동 1402호(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윤숙자				
					4529분의 125.6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665번길 47-65		최성자				
					4529분의 214.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2, 402동 1002호(사동, 현대2차아파트)		이원영				
					4529분의 107.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5, 105동 208호(하늘빛 아파트)		강정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로 23길 20 라동 403호(신길 동, 신미아파트)		우종인	2016.4.18. 압류 (38세금정수과- 9328)	서울특별시	압류		
				4529분의 185.11			강원도 원주시 삼광2길 29(봉산동)		엄상욱					
				4529분의 105.7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동 1001호(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4529분의 109.0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신로 10길 55(시흥 동)		우정석				압류	
				4529분의 216.0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20-7		장정숙					
				4529분의 11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19동 302 호(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백재영					
				4529분의 323.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1412동 1003호(동천동, 한빛마을레미안인 스트팰리스4단지)		정우택					
				4529분의 215.8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95번길 40(금오동)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호신용금고 2007.5.18. 압류 (세무과-11226)	(주)동아상 호신용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저당 압류	공동담보	
				4529분의 96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6동 301호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신철성	2006.9.28. 가압류 결정 (2006카단6035)	의정부농업 협동조합	압류		
				4529분의 115.7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45번안길 1, B01 호(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 노원구고시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2017.09.2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노원구 공고 제2017-842호(2017.10.12)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한 중계동 45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중계동 453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 및 공공공지 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53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701-1)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12.31

마.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공공공지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 2,726 m²
 - 공공공지 : 942 m²

바. 고시방법 : 시보 및 구청홈페이지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2116-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1. 청소년 수련시설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계	노원구 중계동	2,726.0	-	
1	중계동 산4-2	257.0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중계동 산5	177.5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중계동 157-65	92.6	국(건설부)	
4	중계동 451-5	5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5	중계동 451-25	78.0	서울특별시 노원구	
6	중계동 452-4	3.0	서울특별시	
7	중계동 452-13	8.0	서울특별시 노원구	
8	중계동 452-15	14.0	서울특별시 노원구	
9	중계동 452-16	10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0	중계동 452-22	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11	중계동 452-23	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12	중계동 453	722.0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중계동 453-1	92.9	서울특별시 노원구	
14	중계동 453-2	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15	중계동 453-9	267.0	서울특별시 노원구	
16	중계동 453-10	35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7	중계동 453-39	41.0	서울특별시 노원구	
18	중계동 453-41	341.0	국(건설부)	
19	중계동 453-42	17.0	서울특별시 노원구	

2. 공공공지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계	노원구 중계동	942.0	-	
1	중계동 453-36	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중계동 453-37	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중계동 453-38	770.0	서울특별시 노원구	
4	중계동 453-40	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5	중계동 453-38	113.0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대문구고시 제2017-163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17-1030호(2017.10.12.)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나. 게시방법 : 시보게시 및 구홈페이지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등 32필지
- 변 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등 4필지

라. 사업의 규모(면적)

- 당초 : 158.7㎡ ○ 변경 : 165.6㎡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변경 전) 4필지 158.7㎡ → (변경 후) 4필지 165.6㎡

연번	소재지 (변경 전→변경 후)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관리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총정로3가 155-5	대	9.9	9.9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급호 102-1401				
2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5	대	28.8	28.8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급호 102-1401				
3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9	도로	75	5.6	66	0	구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4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11	도로	0	69.4	0	69.4	구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5	서대문구 총정로3가 129-24	도로	79.9	22.4	54	0	시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6	서대문구 총정로3가 129-29	도로	0	57.5	0	57.5	시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 건물(지장물) 현황 : 변경내용 없음

연번	소재지 (도로명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상황	건축물관리 대장면적 (㎡)	현황측 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변경)		변경내용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도로명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서대문구 충정로 35-4)	점포 (회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회집)	39.6696	110.6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양금순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충정로3가 155-5 (서대문구 충정로 35-4)	세입자 (점포)	변경없음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서대문구 충정로 35-6)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철길떡볶이)	-	39.7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변경없음

☐ 영업권조서 : 변경내용 없음

연번	소재지 (도로명주소)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변경내용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도로명주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서대문구 충정로 35-4)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서대문구 충정로 35-4)		변경없음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서대문구 충정로 35-6)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서대문구 충정로 35-6)		변경없음	

◆ 금천구고시 제2017-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금 천 구 청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가. 사업명칭 :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롯데알미늄(주) 대표 김영순(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88 (독산동))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외 2(1005-7, 8)

라. 대지면적 : 30,975㎡(구역면적 45,144㎡)

마.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20~35층, 아파트 927세대, 오피스텔 138실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21년 2월

사. 사 업 비 : 462,390,014,000원

아.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수	타입
민간 임대	121.4188	84.9416	36.4772	178	84A
	121.3759	84.8665	36.5094	139	84B
	85.7734	59.5685	26.2049	238	59A
	106.2334	59.5685	46.6649	8	59AS
	87.1456	59.9603	27.1853	238	59B
	86.9242	59.7990	27.1252	126	59C

자. 주택외 시설 :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분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수	타입
임대 (오피스 텔)	39.4953	24.2978	15.1975	105	24A
	41.0519	24.7320	16.3199	6	24B
	41.6875	25.7018	15.9857	12	25A
	41.6737	25.6778	15.9959	7	25B
	47.4092	29.0870	18.3222	8	29A

- 업무시설 : 24,990.1238㎡
- 근린생활시설 : 819.8087㎡

2.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17-1257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217호(2017.03.02)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44호(2017.03.30)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921호(2017.08.17)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119호(2017.09.07)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23-29번지 외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모 변경 : 당초 - 토지보상 12,550㎡ → 변경 - 10,697㎡ (감 1,853㎡)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의 내 용	
1	4필지 번 산23-29	임야	2,775	2,775			서울특별시					
		묘지	37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	미아동 산25-56	묘지	370	370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3	미아동 산25-57	묘지	952	952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4	미아동 산25-59	묘지	6,084	6,084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5	미아동 산25-61	묘지	80	8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연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6	미아동 산25-65	묘지	507	507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7	미아동 산25-66	묘지	15	15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8	미아동 산25-67	묘지	220	22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9	미아동 산25-68	묘지	1,547	1,547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변경후)

영 포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필지			12,550	10,697				주 소 <td>성 명</td> <td>주 소<td>성 명</td><td>관 리 하 는 내 용</td><td></td></td>	성 명	주 소 <td>성 명</td> <td>관 리 하 는 내 용</td> <td></td>	성 명	관 리 하 는 내 용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 리 의 내 용	
1	변동 산23-29	임야	2,775	2,775			서울특별시					
2	미아동 산25-56	묘지	370	37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3	미아동 산25-57	묘지	952	245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4	미아동 산25-59	묘지	6,084	5,584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5	미아동 산25-61	묘지	80	8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6	미아동 산25-65	묘지	507	361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 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7	미아동 산25-66	묘지	15	15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8	미아동 산25-67	묘지	220	220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9	미아동 산25-68	묘지	1,547	1,047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씨동103호	이재환				

◆ 양천구공고 제2017-12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20), 여성가족과(☎2620-3389)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안)
 - 가) 도로 변경(폐지)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3	6	일반도로	보행도로	57	신정동 733-5	신정동 758-4	1997.10.30. (서고시 제332호)	

나) 공공공지(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신정동 733-48번지 일대	1,141	감 326	826	2004.7.10. (구고시 제53호)	

다) 청소년수련시설(신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신정동 1290-6번지 일대	-	증 1,935.8	1,935.8	-	

○ 건축범위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신정동 1290-6번지 일대	50%이하	250%이하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결정 사유서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로(기능상실) 폐지 및 공공공지를 변경결정하고, 본 토지를 포함한 신정동 1290-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함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17-1446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도로 및 녹지 변경) 주민열람 공고

1.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강 서 구 청 장

①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②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44)

③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도로	697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2003. 12.18	
변경	중로	2	35	18 (15)	집산도로	226	내발산동 384-1	중로2-15	일반 도로	마곡지구	2008. 12.30	
변경	중로	2	36	18 (15)	집산도로	271 (209)	중로2-16	대로3-1	일반 도로	마곡지구	2008. 12.30	
변경	중로	3	5	14	집산도로	246 (197)	대로3-1	중로1-2	일반 도로	마곡지구	2008. 12.30	
변경	소로	3	16	3.5	특수도로	100	중로 2-36	중로3-5	보행자 도로			

주 : 1) ()는 지구내 폭원 및 연장임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내발산동 222-1일원	601.6	증)598.4	1,200	2003. 12.18	
폐지	33	녹지	완충 녹지	내발산동 222-2일원	79.3	감)79.3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④ 관계도면 : 생략(강서구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구로구공고 제2017-16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구로구 고척동 129-3번지 일원 서울고척초등학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8)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 → 고시·공고),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서울시보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5학교	초등 학교	구로구 고척동 129-3번지 일원	12,356	증)542	12,898	1978.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	부지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2)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이하	35이하	120이하	130이하	5층이하 (높이제한완화)	5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면 적 : 12,356㎡→12,898㎡ - 건폐율 : 30%이하→35%이하 - 용적률 : 120%이하→130%이하	- 개봉동(한일시멘트) 및 고척동(서울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이적지 개발로 인한 증가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서울 고척초등학교 교사동 및 유치원동 별도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건축범위 변경

라. 관련도면 : 생략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서초구공고 제2017-140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초구 서초동1338-7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과 관련하여 2017.07.06. 열람공고 및 2017년 제7차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시행 후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	서초동 1338-7	1,387.9	감) 1,387.9	-	서고 제117호 (1978.3.23)	

※ 서초동 1339-9번지 건축물 철거 시 서초동 1338-7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효력 발생.

- 단, 서초동 1339-9번지(강남메트로빌딩)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서초동 1338-7번지 공공기여(기부채납) 반드시 별도 협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 용도 : 업무시설
- 규모 : 총 연면적 568.27㎡, 전용면적 394.81㎡(지상1층 : 274.44㎡, 지하2층 : 120.37㎡)

2)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주차장	주차장폐지 - 면적 : 1,387.9㎡	서초동 1339-9번지 신축시 해당 필지내 부설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시설 폐지

나. 열람기간 : 2017.11.09. ~ 2017.11.23.(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5)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동력선 4척 (121㎡) - 모터보트 4척 - 파워보트 1척	수상레저사업	2017.11.1. ~ 2017.12.31.	2017. 10.30.
			동력선 1척 (47㎡) - 모터보트 4척		2017.11.1. ~ 2017.11.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시크릿 (대표:허승범)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한강)	유선장 직접점용 1,795.5㎡ 간접점용 3,502.5㎡	유선사업	2017. 11. 1 ~ 2017.12.31	2017. 10.31.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시크릿 (대표:허승범)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한강)	선박 2척 (유선1, 구조선1)	유선사업	2017. 11. 1 ~ 2017.12.31	2017. 10.31.
			장애인 진·출입로 152㎡			
			상·하수도 관로 2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두모교)	선박 2척	두모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2017.11.07.~ 2017.11.12.	2017. 11.0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선영종합 엔지니어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서울시계 내 한강 (김포대교~미사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2017.11.06.~ 2017.11.15.	2017. 11.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투우엔지니어링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1	서울시계 내 한강 (마포대교~원효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2017.11.07.~ 2017.12.30.	2017. 11.0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한남대교)	선박 2척	한남대교 보수공사	2017.11.07.~ 2017.12.31.	2017. 11.07.

사업소공고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17-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등록 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등록 일자
제영등포 2017-3호	소방시설 관리업	㈜드림엔지니어링	오진택 (1969.3.3.)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2 재명빌딩 2층	2017.11.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정 정

서울시보 제3433호(2017.10.19)에 게재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정정 전]

용산구 **공고** 제2017-128호

→

[정정 후]

용산구 **고시** 제2017-128호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